

의안번호	제 3 호	의 결 사 항
의결 년월일	2004. 2. .	

사천시 화장장 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년월일	2004. 2. 16.

사천시 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	---

제출연월일	2004. 2.
제출자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 시 화장장사용료가 2001년 개정 이후 유가인상,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으로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범위 확대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장장사용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4조제1항)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나. 시외 주민의 화장장사용료 징수요율 별표로 이기(안 제5조 및 안 별표1)

다. 화장장사용료 조정(안 별표1)

구분		현행(천원)		개정안(천원)	
요율구분	단위	사천시 관내거주자	사천시 관외거주자	사천시 관내거주자	사천시 관외거주자
15세 이상	1구당	35	70	55	165
15세 미만	1구당	31	62	45	135
개장유골	1구당	17	34	25	75
사산오물	1구당	14	28	20	60
기타적출물	kg당	0.6	1.2	1	3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3.12.30 ~ 2004.1.26)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4) 예상수입 : 연간 70,384천원(2003년 수입 35,176천원)

사천시 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 화장장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여, 동조동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자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천시 화장장 사용료 (제3조 관련)

구 분	단 위	사용료 (천원)		비 고
		사천시관내거주자	사천시관외거주자	
가. 15세이상	1구당	<u>55</u>	<u>165</u>	
나. 15세미만	1구당	<u>45</u>	<u>135</u>	
다. 개장유골	1구당	<u>25</u>	<u>75</u>	
라. 사산오물	1구당	<u>20</u>	<u>60</u>	
마. 기타적출물	kg당	<u>1</u>	<u>3</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 <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2. (생략)</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시외주민의 사용) ①시장은 <u>시외주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화장장을 사용케 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을 사용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200을 징수한다.</p>	<p>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u></p> <p>3. <u>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자</u></p> <p>4. <u>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자</u></p> <p>5. (현행 제2호와 같음)</p> <p>6.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시외주민의사용) ① <u><삭 제></u></p> <p>② <u><삭 제></u></p>

<개정전>

[별표 1]

화장장사용료징수기준

요 율 구 분	기 본	요 액	비 고
가. 15세이상	1구당	<u>35,000원</u>	
나. 15세미만	1구당	<u>31,000원</u>	
다. 개장유골	1구당	<u>17,000원</u>	
라. 사산오물	1구당	<u>14,000원</u>	
마. 기타적출물	kg당	<u>600원</u>	

<개정후>

[별표 1]

사천시 화장장사용료(제3조 관련)

구 분	단 위	사용료 (천원)		비 고
		사천시 관내거주자	사천시 관외거주자	
가. 15세이상	1구당	<u>55</u>	<u>165</u>	
나. 15세미만	1구당	<u>45</u>	<u>135</u>	
다. 개장유골	1구당	<u>25</u>	<u>75</u>	
라. 사산오물	1구당	<u>20</u>	<u>60</u>	
마. 기타적출물	kg당	<u>1</u>	<u>3</u>	

관계법령발취

장사등에 관한 법률

第12條 (公設墓地 등의 設置) ①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公設墓地·公設火葬場 및 公設納骨施設을 設置·관리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 特性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設墓地·公設火葬場 및 公設納骨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과 공동으로 設置·관리할 수 있다.

③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第4條 (適用對象 國家有功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

1. 殉國先烈 : 獨立有功者禮遇에 관한 法律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殉國先烈

2. 愛國志士 : 獨立有功者禮遇에 관한 法律 第4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愛國志士

3. 戰歿軍警 : 다음 各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을 입고 轉役(退役·免役 또는 常勤豫備役召集解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退職(免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을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戰傷軍警 :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痍을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者(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痍을 입고 退職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5. 殉職軍警 : 다음 各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公傷軍警 :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教育訓練 또는 職務遂行중 傷痍(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者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7. 武功受勳者 : 武功勳章을 받은 者

7의2. 保國受勳者 : 保國勳章을 받은 者

8. 6·25參戰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在日學徒義勇軍人"이라 한다) :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日本國에 居住하던 者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國軍 또는 國際聯合軍에 志願 入隊하여 6·25事變에 參戰하고 除隊된 者(罷免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除隊된 者를 제외한다)

9. 4·19革命死亡者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하여 死亡한 者

10. 4·19革命負傷者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하여 傷痍을 입은 者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10의2. 4.19革命功勞者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建國褒章을 받은 자

11. 殉職公務員 : 다음 各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國家公務員法 제2조 및 地方公務員法 제2조에 規定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國家公務員法 제2조 및 地方公務員法 제2조에 規定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 公傷公務員：國家公務員法 第2條 및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公務員(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일상적으로 公務에 종사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으로서 公務로 인하여 傷痍(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判定된 者
13.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殉職者(이하 "特別功勞殉職者"라 한다)：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그 功勞와 관련되어 殉職한 者로서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14.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傷痍者(이하 "特別功勞傷痍者"라 한다)：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그 功勞와 관련되어 傷痍를 입은 者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判定되어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15.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者(이하 "特別功勞者"라 한다)：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第13號 및 第14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②제1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3호 가목：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 나목 및 제4호：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 가목：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6호：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1호 가목：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1호 나목 및 제12호：공무로 인하여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삭제 <2002.1.26>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殉國先烈·愛國志士의 禮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⑤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規定에 의한 國家有功者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傷痍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되는 國家有功者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2.1.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關係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枯葉劑"라 함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南方限界線의 隣接地域으로서 國防部令이 정하는 地域(이하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이라 한다)에서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除草劑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
2. "枯葉劑後遺症患者"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兵役法, 軍人事法 또는 軍務員人事法에 의한 軍인이나 軍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者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軍의 작전에 종군한 記者(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라 한다)로서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疾病을 얻은 者
 -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兵役法, 軍人事法 또는 軍務員人事法에 의한 軍인이나 軍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者(이하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 한다)로서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疾病을 얻은 者
3. "枯葉劑後遺疑症患者"라 함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으로서 第5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疾病을 얻은 者를 말한다.
4.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라 함은 第4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로 인정된 者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 업무에 참가한 날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중 第5條第6項에 해당하는 疾病을 얻은 者를 말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 “광주” → “5.18”로 자구 개정(법률 제7105호, 2004.1.20)

타시군 화장장사용료 현황

시군별	항 목	사 용 료		감 면		비고
		시 내	시 외	대 상	감면율	
마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15세이상) ◦ 아동 ◦ 개장유골 ◦ 사산등 ◦ 기타 (1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00 ◦ 19,500 ◦ 10,500 ◦ 8,500 ◦ 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8,000 ◦ 64,000 ◦ 35,000 ◦ 28,500 ◦ 1,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 50% ◦ 전액 	2003.4.11 개정
진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15세이상) ◦ 아동 ◦ 개장유골 ◦ 사산등 ◦ 기타 (1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00 ◦ 90,000 ◦ 70,000 ◦ 50,000 ◦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수급자 ◦ 기타 	전액	1999.7. 1 개정
진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15세이상) ◦ 아동 ◦ 개장유골 ◦ 사산등 ◦ 기타 (1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7,000 ◦ 32,000 ◦ 18,000 ◦ 15,000 ◦ 1,000 	30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수급자 ◦ 국가유공자 ◦ 유공자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 전액 ◦ 50% 	2002.4.16 개정
통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15세이상) ◦ 아동 ◦ 개장유골 ◦ 사산등 ◦ 기타 (1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 ◦ 30,000 ◦ 15,000 ◦ 10,000 ◦ 1,000 	30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수급자 ◦ 기타 	전액	2001.6.15 개정
김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15세이상) ◦ 아동 ◦ 개장유골 ◦ 사산등 ◦ 기타 (1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00 ◦ 60,000 ◦ 40,000 ◦ 50,000 ◦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00 ◦ 150,000 ◦ 100,000 ◦ 125,000 ◦ 사용제한 			2003.7.31 제정
밀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15세이상) ◦ 아동 ◦ 개장유골 ◦ 사산등 ◦ 기타 (1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000 ◦ 27,000 ◦ 15,000 ◦ 13,000 ◦ 1,000 	30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수급자 ◦ 국가유공자 	전액	1997.10.25 개정
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15세이상) ◦ 아동 ◦ 개장유골 ◦ 사산등 ◦ 기타 (1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000 ◦ 30,000 ◦ 21,500 ◦ 16,000 ◦ 1,250 	30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수급자 ◦ 기타 	전액	2002.1. 7 개정
사천시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이상 ◦ 15세미만 ◦ 개장유골 ◦ 사산등 ◦ 기타 (1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00 ◦ 31,000 ◦ 17,000 ◦ 14,000 ◦ 600 	20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수급자 ◦ 기타 	전액	2001.1.13 개정
사천시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이상 ◦ 15세미만 ◦ 개장유골 ◦ 사산등 ◦ 기타 (1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000 ◦ 45,000 ◦ 25,000 ◦ 20,000 ◦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5,000 ◦ 135,000 ◦ 75,000 ◦ 60,000 ◦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수급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 기타 	전액	